

지평선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제1장 규정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시 제2019-74호(2015.9.23.) 및 제2022-33호(2022.12.22.)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의거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제2조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교교육과정은 당해 연도의 전·보통·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편성·운영한다.

- ① 학생 과목 수요조사
-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의결
- ③ 학교장 최종 확인 및 승인

제3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제5조 [학생 수강신청과 상담] 학교의 모든 교사는 학생의 과목 선택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상담한다.

제6조 [학생 수강신청 절차] 학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 ① 사전 수요 조사: 학교교육과정 편제와 관계없이 모든 선택과목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 및 박람회 진행 후 사전 수요 조사 실시
- ② 학생 1차 수강신청: 학생 선택과목 수요 조사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다음 연도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라 1차 수강신청 실시
- ③ 학생 2차(최종) 수강신청: 1차 수강신청 결과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폐강 결정된 과목을 제외하고 최종 수강신청 실시

제7조 [선택과목 개설 및 폐강] 선택과목은 학생 대상 선택과목 수요 조사 및 1차 수강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60%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 수업에 필요한 학교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수강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신청 인원이 ①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인수 선택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 ④ 선택 인원이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 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과목은 분반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위 ②항의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관련 과목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보충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제8조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 ① 제7조 ①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진로 역량 재고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설을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② 최소 수강 희망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소인수 과목 개설 여부를 논의한다.
- ③ 학년 말에 수강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신청 인원이 변동된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1. 다수 학생이 수강 선택한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2. 학생의 진로 역량 재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3. 교사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④ 소인수 선택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장 선택과목의 변경

제9조 [선택과목의 변경]

- ① 학생이 수강신청을 통해 선택한 과목은 10월 말까지 학생/보호자의 '최종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수강 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 변경, 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항의 수강 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 종업식 전까지로 하여,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③ ②항에 따른 선택과목의 변경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순서	절차	내용
1	학생의 과목 변경 희망	- 학생의 진로, 진학 및 적성과 관련하여 과목 변경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필수
2	선택과목 변경 희망원 작성	- 담임교사, 교과 교사, 진로교사 등과 최소 2회 이상 상담 실시 - 담임교사가 통화 혹은 대면으로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 변경 희망원을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학생/보호자 서명
3	선택과목 변경 희망원 제출	- 선택과목 변경 희망원을 담당부서로 제출
4	결과 안내	- 선택과목 변경 가능 여부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안내

제10조 [교과목의 위계를 위반한 수강 과목 신청] 진로 변경으로 위계 상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 ① 담임교사 학생/보호자 상담
- ② 교육과정 업무 교사와의 상담
- ③ 과목 선택 신청서 및 담임교사 의견서 제출
- ④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학교장 승인

제11조 [학교의 필요에 따른 과목 변경]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수강 과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

- ① 담당부서의 검토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② 학생과 보호자 안내 및 동의서 징구
- ③ 학교장 승인

제12조 [공강 운영]

- ①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 학생별 또는 학급별 공강 시간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공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② 공강 시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와 담당 지도 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③ 공강 시간 담당 지도 교사를 배정할 시 공강 시간 지도 시수는 일과 내 정규 교육과정 시간표의 교과 수업 시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1. 공강 지도 교사는 담임교사를 우선 배정
 2. 공강 지도 교사는 수업 시수가 적은 순으로 배정
 3. 공강 지도 교사의 공강 지도는 정량평가-자기실적평가서 수업 시수로 인정
- ④ 학생은 학교(지도 교사)가 지정 또는 허락한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 및 교내 활동 등에 참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